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비전임교원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라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을 말한다.

제3조 (자격) 본교에 신규임용되는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② 본교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며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③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를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④ 제 3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1.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2.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3.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제4조 (임용절차)

- ①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필요로 하는 학과(전공) 및 부서(사업단)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예정학기 2개월 전에 임용계획서(임용의 필요성, 책무, 임용기간 등 포함) 및 추천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단 소속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일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임용 계획서 및 추천서를 검토하고, 교무처장의 임용요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제5조 (임용기간 등) ①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사업 및 기타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연한은 만 65세가 포함된 학기까지로 한다.

제6조 (재임용)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산학협력 실적 중심의 재계약 심사를 거쳐야 하며,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제7조 (책임시수)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학기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 (의무)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는 계약기간 중 성실히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고 본교의 제반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대학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9조 (금지)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수는 타 기관에 겸직 종사할 수 없으며, 타 기관 및 단체에 출강할 수 없다. 단, 사정에 의하여 타 기관 및 단체에 출강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속부

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시행세칙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과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7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제2항 신설 <2017 제21차 교무위원회>)